

#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#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 : 2015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## 1. 제안이유

「여성발전기본법」이 2015. 7. 1부터 「양성평등기본법」으로 전부 개정·시행됨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제명변경 : 「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로 변경
- 나. 제2장 여성의 참여 확대 등을 규정한 여성시책을 남녀의 동등한 참여기회 보장 등의 양성평등시책으로 변경(안 제4조 ~ 안 제18조)
- 다. 여성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(안 제19조 ~ 안 제21조)
- 라. 여성발전기금의 명칭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(안 제30조)
- 마.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(안 제31조)
- 바. 기금의 용도 양성평등 관련 추가(안 제32조)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

#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구미시의 양성평등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양성평등”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, 편견, 비하 및 폭력이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, 「양성평등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#### 제2장 양성평등시책

제4조(양성평등시책시행계획의 수립)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양

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,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시책의 수립·시행 등) 시장은 소관 시책을 수립·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책이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, 필요시 관계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6조(양성평등주간행사) 시장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유공자 표창 등) 시장은 「구미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유공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.

제8조(시정참여의 확대) ① 시장은 남녀의 평등한 시정참여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이 시책결정을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9조(공직참여의 촉진)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, 보직관리, 승진, 포상, 교육훈련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0조(양성평등의식의 제고) 시장은 가정·학교·직장·사회교육기관

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예방) 시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,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
2.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 사업
3. 그 밖에 폭력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

제12조(복지증진)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저소득한부모가족·미혼모·가출여성 및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이들에 대한 선도·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취약계층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3조(모·부성보호의 강화) ① 시장은 임신·출산·수유·육아에 관한 모·부성권을 보장하고,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보육의 질적수준 향상, 보육시설의 확충, 방과후 아동보육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(경제활동의 지원)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·창업·기업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.

제15조(단체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 여성단체,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양성평등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2.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
3. 여성지도자 국내외 교류 지원
4. 그 밖에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사업

제16조(관련시설의 설치·운영)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7조(자원봉사활동의 지원)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8조(국제협력의 지원) 시장은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남녀의 참여를 확대하고,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해 국제

협력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
###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

제19조(설치) 양성평등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미시양성평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20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양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2.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
3. 양성평등복지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
4. 양성평등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21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, 여성단체 협의회장, 여성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양성평등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
2. 여성관련분야 및 양성평등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
3. 여성·가족 분야 및 각계각층 직능 대표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, 간사는 여성정책 소관업무담당과장, 서기는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.

제22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23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4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5조(분과위원회)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26조(의견청취 등)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제27조(위원의 위촉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 중 스스로 사임하고자 할 때
2.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3.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28조(실비변상)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9조(세부사항)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.

#### 제4장 양성평등기금

제30조(기금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양성평등촉진과 여성의 능력개발,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양성평등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용한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구미시의 출연금
2.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제31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2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

1.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
2. 취약계층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의 사회활동참여의 지원
3. 여성·가족친화사업의 지원
4. 제18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
5.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

제33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기금은 해당연도 기금의 이자발생 수익금의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.

④ 해당연도 결산 잉여금은 전액 재적립하여야 한다.

제34조(기금운용계획)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5조(회계공무원)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소관업무담당과장
2. 기금출납원 : 소관업무담당주사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36조(기금의 결산)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7조(관계규정의 준용)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·출납·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·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.

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구미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## 제5장 보칙

제38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·범위, 위탁의 방법·절차 등에 대하여는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구미시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.

②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구미시 여성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구미시 양성평등위원회로 보고,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미시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구미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.

제3조(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한 특례) ①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

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·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2항의 성별비율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위촉직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성별비율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.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**제7조(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)**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
2.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
3.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
4.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.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

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8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)**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각각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·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11조(양성평등위원회)**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2.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
3.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
4.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(性 主流化)에 관한 사항
5.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
6.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
2.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

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(이하 이 조에서 "관리직 목표제"라 한다)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.

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,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22조(공직 참여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·보직관리·승진·포상·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.

**제23조(정치 참여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24조(경제활동 참여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·채용·교육훈련·승진·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·출산·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25조(모·부성의 권리 보장)**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·출산·수유·육아에 관한 모·부성권을 보장하고,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모·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「사회보장기본법」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.

**제26조(일·가정 양립지원)**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, 유아교육, 방과 후 아동 돌봄,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,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·운영의 활성화,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30조(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)** ① 국

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·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,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·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(矯正)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**제33조(복지증진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·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, 한부모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38조(양성평등주간)**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.

**제40조(국제협력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, 여성가족부장관은 특히 양성평등

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(連帶)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42조(기금의 설치 등)**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국가의 출연금
2.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
3. 기금의 운용수익금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·관리한다.

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**제43조(기금의 용도)**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
1.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
2.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
3.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

**제44조(기금의 회계기관)**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, 기금재무관,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.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명된 자가 각각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이사(理事)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
  - 가. 기금수입담당이사: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
  - 나.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: 기금재무관의 직무
2.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는 자
  - 가. 기금지출직원: 기금지출관의 직무
  - 나. 기금출납직원: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

**제45조(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**제51조(비영리법인·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, 양성평등 문화 확산,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| 소관 실·과      |       | 가족지원과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입<br>안<br>자 | 과 장   | 김 용 학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담 당   | 이 정 화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담 당 자 | 윤 혜 민<br>(480-6564) |